

2023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지표

2023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1. 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		(☎ - -)			
지정 및 관리 현황	지정 일자	(최초지정일)		(변경지정일)			
	지정 분야	종합 ()	안전 ()	보건 ()	건설 ()		
	지정 지역	☐ 서울청 ☐ 충부청 ☐ 부산청 ☐ 대구청 ☐ 광주청 ☐ 대전청 (세부지역 :)					
	지정 인력	총계	1)호	2)호	3)호	4)호	5)호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관리 현황	진단실적	개소 () 만원)				
구 모 별 진단실적		50인 미만	50 ~ 299인	300 ~ 499인	500인 이상		
개소							

2. 평가개요

평가일	2023년 월 일 ~ 월 일(일간)			
평가반	소 속	직책	성명	비고
				반장
				반원
				외부위원
기관 참여자				

3. 평가 결과

(총 점수)

점

(A)운영체계

점

(B)업무성과

점

4. 평가의견

2023 년 월 일

평가반장:

(서명)

기관 확인자:

(서명)

※ 첨부서류: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표 1부

2023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지표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 점
합 계			1,000
A 운영체계	소 계		400
	A.1 운영관리체계 (배점: 100점, 감점: -30점)	1.1 운영규정(매뉴얼) 수립의 적정성	30(-10)
		1.2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40(-10)
		1.3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30(-1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배점: 200점)	2.1 추가인력 확보 노력	30
		2.2 고급인력의 확보	10
		2.3 진단인력의 근속기간 수준	10
		2.4 진단인력의 정규직화 노력	20
		2.5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50
		2.6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50
		2.7 진단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노력	3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배점: 100점, 감점: -10점)	3.1 보유 장비 운용관리 체계의 적정성	20(-10)
		3.2 보유 장비 검·교정 실시의 적정성	30
		3.3 진단장비 사용 숙지상태	10
		3.4 추가 장비 확보 및 활용 노력	30
		3.5 홈페이지 등 기관의 정보공개 노력	10
	A.4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가점: +20점, 감점: -140점)	4.1 포상실적	+20
		4.2 업무정지 처분실적	-90
		4.3 시정조치·경고 처분실적	-50
B 업무성과	소 계		600
	B.1 진단보고서의 총실성 (배점: 380점, 감점: -10점)	1.1 자율진단 실시 노력	50
		1.2 진단일수 준수 노력	40
		1.3 재해통계분석에 따른 개선대책의 적정성	60
		1.4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100
		1.5 위험성평가의 양적(Quantitative) 적용	20
		1.6 위험성평가의 질적(Qualitative) 적용	30
		1.7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 노력	30
		1.8 법정장비 활용의 적정성	50(-10)
	B.2 재해감소성과 (배점: 50점, 감점: -100점)	2.1 중상해 재해율 감소 성과	20
		2.2 사망만인을 감소 성과	30
		2.3 진단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100
	B.3 고객만족도 (배점: 50점)	3.1 진단사업장 만족도	50
	B.4 진단 우수사례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배점: 120점)	4.1 안전보건진단 우수사례	70
		4.2 안전 활동 우수사례 실적	30
		4.3 전문분야 진단 실적	20
	B.5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가점: +20점, +10점)	5.1 K2B 전산관리의 적정성	+20 (+10)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

☐ 문서화 여부 평가기준

- 문서화란 결재를 득한 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가 기입된 문서만 인정

평 가 기 준	감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 및 문서상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및 결재를 득함	감점 없음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하나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또는 결재가 없음	-2점
㉢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발송/내부결재 문서를 통합 또는 구분 등록 관리를 하지 않고 문서상 등록(접수)번호와 등록일자 기재 또는 결재가 없음	-3점
㉣ 기록물관리기준이 없으며, 문서화 하지 않음	-5점

※ 국가 기록물 사무관리지침에 따라 문서관리를 하는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고, 기관자체 문서관리 규정(지침)이 있을시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평가지표 항목별 문서화 합산 점수는 최저점은 “0”점으로 평가

- 예) 항목 득점이 0점이고 문서화 점수가 -5점 평가 시 항목 합계 점수는 “0”점으로 평가

☐ 업무규정(매뉴얼) 등 회람여부 평가기준

- 업무규정(매뉴얼), 연간 사업계획 및 업무분장 등의 문서에 대해 기관 등록 인력의 회람 여부에 대해 평가

평 가 기 준	감점
㉠ 기관 등록 인력의 90%이상 회람	감점 없음
㉡ 기관 등록 인력의 70%이상 90%미만 회람	-2점
㉢ 기관 등록 인력의 50%이상 70%미만 회람	-3점
㉣ 기관 등록 인력의 50%미만 회람	-5점

※ 평가지표 항목별 회람여부 합산 점수는 최저점은 “0”점으로 평가

- 예) 항목 득점이 0점이고 회람여부 점수가 -5점 평가 시 항목 합계 점수는 “0”점으로 평가

☐ 평가 산식에 따른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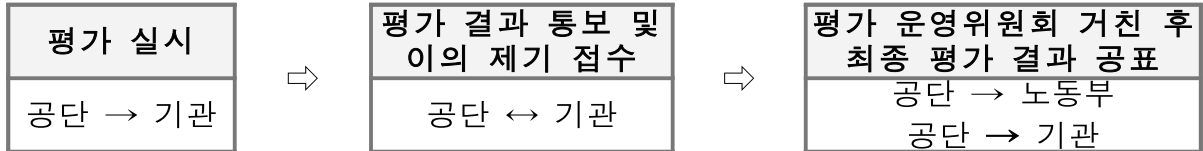
☐ 평가 대상 기간은 2022. 1. 1. ~ 2022. 12. 31. 기준임. 다만,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

☐ 최종 평가 결과 확정시기

- 이의 제기 접수를 위해 통보된 평가 점수는 최종 결과가 아님
- 최종 등급은 이의 제기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평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평가 결과 확정 및 공표】



☐ 지부(출장소)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

- 지부(회)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 최종 평가 결과 업무관리체계(400점), 업무성과(600점) 중 가점(각 +50점)을 득하더라도 만점을 넘을 수 없음

(예시: 업무관리체계 평가 결과 400점+ 가점 30점 = 400점으로 평가)

세부평가 A.1.1	운영규정(매뉴얼) 수립의 적정성(배점: 30점, 감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운영규정(매뉴얼) 수립의 적정성	필수사항을 모두 반영한 경우	☐ 30
	필수사항 중 1가지 누락된 경우	☐ 20
	필수사항 중 2가지 누락된 경우	☐ 10
	필수반영사항 미수립·미반영한 경우	☐ 0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회람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 취지	체계적인 운영규정(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관의 진단 능력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운영규정(매뉴얼) 제정 시 필수 반영사항 적용 여부를 평가 ※ 운영규정(매뉴얼)의 제·개정에 따른 일치 여부 확인 - 작성 항목은 만족하나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규정(지침)에 따라 실행 여부가 상이할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평가 기준 필수사항 ○ 진단업무 수행 지침에 관한 사항(매뉴얼) ① 진단업무 수행 절차 및 매뉴얼 ○ 기록물(문서) 관리(결재, 등록, 보존)에 관한 사항 ② 기록물관리 절차 및 방법 ③ 기록물 보존 연한 ※ 위 필수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외 필요한 사항은 기관 필요에 따라 작성	
확인사항	☐ 운영규정(매뉴얼, 지침) 등	

세부평가 A.1.2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배점: 40점, 감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연간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필수사항을 모두 반영한 경우	☐ 40	
	필수사항 중 1가지 누락된 경우	☐ 30	
	필수사항 중 2가지 누락된 경우	☐ 20	
	필수사항 중 3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 10	
	연간 사업계획 미수립 및 필수사항 전체 미반영	☐ 0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회람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 취지			
진단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를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사업계획 수립 시 필수 반영사항 적용 여부를 평가			
☐ 평가 기준			
필수사항 ① 기관의 추진전략 및 목표 - 전년도 사업실적 분석 및 당해 연도 사업목표 수립 여부 ② 직원 운용계획 - 진단인력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여부 ③ 직원 교육계획 - 진단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계획 수립 여부 ④ 진단장비 활용계획 - 진단장비의 분야별 활용계획 수립 여부 ⑤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 전년도 만족도 분석 및 목표 설정, 만족도 향상 세부 방안 수립 여부 ⑥ 당해 연도 사업평가 계획 및 결과			
※ 사업계획은 분석→문제점파악→목표 설정→실행단계로 필수사항별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한 단계 하향 평가 ※ '22년도 신규기관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미수립한 경우 지정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최초 1년간 안전보건 진단사업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최소 기본점수(10점) 부여] ※ 위 필수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외 필요한 사항은 기관 필요에 따라 작성			
확인사항			
☐ 연간 사업계획서 등			

세부평가 A.1.3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배점: 30점, 감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필수사항을 모두 반영한 경우	☐ 30
	필수사항 중 1가지 누락된 경우	☐ 20
	필수사항 중 2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 10
	필수사항 미수립·미반영한 경우	☐ 0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회람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 취지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조직도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의 업무관리체계 및 업무분장 문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 ○ 진단인력을 임의 선정(1~2명)하여 업무분장 등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평가 기준 필수사항 ㉠ 진단기관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이 명확히 구분함 ㉡ 진단인력 등 책임자 등을 기재하고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총괄책임자, 진단분야별 담당자, 진단장비 담당자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진단기관 구성 인력이 실제 업무분장 상 업무를 수행함 - 지정인력이 진단 외 업무(산안법 및 타 법에 의해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인 ㉣ 인력 변동 시 변경일(진단인력의 경우 변경등록일) 기준 30일 이내 업무분장을 변경함 (예: '22. 1. 20. 변동 → '22. 2. 19.까지 변경) ※ 위 필수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외 필요한 사항은 기관 필요에 따라 작성	
확인사항	☐ 조직도, 업무분장, 업무분장 변경 공문 등	

세부평가 A.2.1	추가인력 확보 노력(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추가인력 확보 노력	법정 필수인력 외 추가 인력 4명 이상인 경우	☐ 30
	법정 필수인력 외 추가 인력 3명인 경우	☐ 20
	법정 필수인력 외 추가 인력 2명인 경우	☐ 10
	법정 필수인력 외 추가 인력 1명인 경우	☐ 5
	법정 필수인력 외 추가 인력이 없는 경우	☐ 0
평가 취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해 진단의 질적 수준 향상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추가인력 판단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인력에 대해 문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 - 평가 대상 기간 중 1/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신규직원 또는 퇴직인력 포함 ☐ 평가 기준 추가인력 판단기준 ㉠ 산안법 시행령 별표 15, 16,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할 것 ㉡ 법정 인력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업무분장 상 포함되어 있을 것 ㉣ 평가대상기간 내 진단 참여 실적이 있을 것(1회 이상) ㉤ 상근(월~금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 다만, 유연근무제, 시간단축제 등의 관련 문서가 있을시 인정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서 타 기관 중복 등록 여부 조회 ※ 위의 추가인력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추가인력으로 인정		
확인사항		
☐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류 등		

세부평가 A.2.2	고급인력의 확보(배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고급인력 확보 노력	분야별 기술사/지도사/의사/박사(명)×2점(최대 10점)																																		
평가 취지	필수인력 등 고급 진단인력 확보 및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진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의 인력현황을 파악하여 자격사항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 기간 중 1/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신규직원 또는 퇴직인력 포함 ※ 전체 진단인력 대비 기술사/지도사/의사/박사 등 고급인력의 구성비 파악 □ 평가 기준 ○ 등록 인력 기준 기술사, 지도사, 의사, 박사 인력에 대해 1명 당 2점 부여(최대 10점) ※ 기술사, 지도사, 의사의 자격인력 중 법정 필수인력(1명)은 제외 ※ 박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한해 인정 ○ 인력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자 격</th> <th>기준명</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일반안전</td> <td>- 기계·화공·전기·안전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td> <td>1</td> <td rowspan="5">등록 인력 기준 기술사, 지도사, 박사 1명 추가 시 2점 부여</td> </tr> <tr> <td>- 산업안전기사</td> <td>2</td> </tr> <tr> <td>- 기계기사</td> <td>1</td> </tr> <tr> <td>- 전기기사</td> <td>1</td> </tr> <tr> <td>- 화공기사</td> <td>1</td> </tr> <tr> <td rowspan="3">건설안전</td> <td>-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td> <td>1</td> <td rowspan="3">등록 인력 기준 기술사, 지도사, 박사 1명 추가 시 2점 부여</td> </tr> <tr> <td>- 건설안전기사</td> <td>2</td> </tr> <tr> <td>-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td> <td>2</td> </tr> <tr> <td rowspan="3">보건진단</td> <td>-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td> <td>1</td> <td rowspan="3">등록 인력 기준 의사, 기술사, 지도사, 박사 1명 추가시 2점 부여</td> </tr> <tr> <td>- 분석전문가</td> <td>2</td> </tr> <tr> <td>- 산업위생관리기사</td> <td>2</td> </tr> </tbody> </table> ○ 법정 및 추가등록 인력을 포함하여 평가 ※ 필수인력 및 추가인력은 상근일 것(월~금 1일 8시간 근무기준). 다만, 유연근무제, 시간단축제 등의 관련 문서가 있을시 인정			분야	자 격	기준명	점수	일반안전	- 기계·화공·전기·안전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	등록 인력 기준 기술사, 지도사, 박사 1명 추가 시 2점 부여	- 산업안전기사	2	- 기계기사	1	- 전기기사	1	- 화공기사	1	건설안전	-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	등록 인력 기준 기술사, 지도사, 박사 1명 추가 시 2점 부여	- 건설안전기사	2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2	보건진단	-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	등록 인력 기준 의사, 기술사, 지도사, 박사 1명 추가시 2점 부여	- 분석전문가	2	- 산업위생관리기사	2
분야	자 격	기준명	점수																																
일반안전	- 기계·화공·전기·안전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	등록 인력 기준 기술사, 지도사, 박사 1명 추가 시 2점 부여																																
	- 산업안전기사	2																																	
	- 기계기사	1																																	
	- 전기기사	1																																	
	- 화공기사	1																																	
건설안전	-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	등록 인력 기준 기술사, 지도사, 박사 1명 추가 시 2점 부여																																
	- 건설안전기사	2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2																																	
보건진단	-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 위생관리기술사	1	등록 인력 기준 의사, 기술사, 지도사, 박사 1명 추가시 2점 부여																																
	- 분석전문가	2																																	
	- 산업위생관리기사	2																																	
확인사항	□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자격사항 관련서류 등																																		

세부평가 A.2.3	진단인력 근속기간 수준의 적정성(배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진단인력 근속기간 수준의 적정성	근속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인 경우	☐ 10
	근속 기간이 평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7
	근속 기간이 평균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5
	근속 기간이 평균 3년 미만인 경우	☐ 3
평가 취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진단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기간 내 종사한 모든 법정 등록 인력에 대해서 평가 - 해당 등록 인력이 현재 기관의 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 해당 기관 내에서 진단업무 이외 타 업무를 수행할 시의 기간은 제외 - 평가 대상 기간에 1/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신규직원 또는 퇴직인력 포함 ○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기관 종사 경력 확인 - 보험 가입 여부 외에도 경력증명서 등 관련 업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평가 기준 ○ 해당 기관의 조직도 또는 업무분장 관련 서류를 통해 근무 여부(업무분장 및 조직 관련 문서 등) 확인 ○ 진단인력별 최대 경력인정 상한은 15년으로 한다. 예) 진단인력 3명 중 1명은 30년, 2명은 1년 경력인 경우: (15년+1년+1년)/3명=5.6년 ○ 평가대상 기간 중 결원 발생 시 한 단계 하향 평가 ○ 업무정지 처분기간은 제외(A.4.2 평가)	
확인사항	☐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류 등	

세부평가 A.2.4	진단인력의 정규직화 노력도(배점: 2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진단인력의 정규직화 노력도	정규직 비율이 100% 인 경우	☐ 20
	정규직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15
	정규직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10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5
	정규직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	☐ 3
	진단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인 경우	☐ 0
평가 취지		
진단인력의 고용 안정화를 통한 기관의 수준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기준 ○ 평가 대상 기관의 진단인력 개인별 고용계약서를 제출받아 평가 ※ 평가 대상 진단인력은 법정 신고인력 기준임 ○ 전체 진단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을 산출하여 고용안정 노력도 평가 ☐ 평가 산식 $\text{정규직 비율} = \frac{\text{정규직 진단인력 수}}{\text{전체 진단인력 수}} \times 100$ ☐ 정규직 판단기준 정규직 판단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여부를 평가 –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필수인력 등 진단인력은 상근일 것(월~금 1일 8시간 근무기준). 다만, 유연근무제, 시간단축제 등의 관련 문서가 있을시 인정 – 직원이 출퇴근이 불가하여 상근인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한 단계 하향 – 평가 당일 상근인력에 대해 면담을 통해 상근 여부 확인(관련 서류 확인)		
확인사항		
☐ 고용계약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세부평가 A.2.5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배점: 5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100%인 경우	☐ 50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40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30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20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미만	☐ 10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 취지		
진단인력의 내부 전문화교육 이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연간 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대상기간 중 1/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신규직원 또는 퇴직인력 포함 - 1년 미만 수행 인력은 환산 적용하여 평가 (예: 수행 인력의 근속기간이 6개월인 경우 6시간 환산하여 평가)		
☐ 평가 산식 - 전문화교육 이수율 = $\frac{\text{내부전문화교육 이수한 진단인력 수}}{\text{전체 진단인력의 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내부 전문화교육 인정대상 ㉠ 해당 기관의 장이 매년 종사자 전체 혹은 직종·업무별로 수립한 내부 전문화교육 ㉡ 진단인력별 연 12시간(분기당 3시간)이상 실시한 내부 전문화 교육 ※ 교육결과보고서에 교육내용, 강사, 장소, 시간, 교육생(서명 필), 사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 ○ 내부 전문화교육 제외대상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등)에 해당되는 법정 의무 교육 ㉡ 4대 법정 교육(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장애인 인식개선)		
확인사항		
☐ 연간 교육·훈련 계획수립 문서, 기록물등록대장, 교육결과보고서		

세부평가 A.2.6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배점: 5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외부전문화 교육 이수율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100%인 경우	☐ 50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40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30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20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미만인 경우	☐ 10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 취지		
진단인력의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대상 기간 중 1/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는 신규직원 또는 퇴직인력 포함 - 1년 미만 수행 인력은 환산 적용하여 평가 (예: 수행 인력의 근속기간이 6개월인 경우 집체 외부전문화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온라인 외부 전문화교육과정 8시간 이상 환산하여 평가)		
☐ 평가 산식 - 전문화교육 이수율 = $\frac{\text{외부 전문화교육 이수한 진단인력 수}}{\text{전체 진단인력 수}} \times 100$ ※ 진단인력 1인당 1회에 한함		
☐ 평가 기준 ○ 외부 전문화교육 인정대상 ㉠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8시간 이상 집체 외부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16시간 이상 온라인 외부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직무 수행에 보조적인 교육(인문, 사회, CS 교육, 통계, 기업진단 등) ○ 외부 전문화교육 제외대상 ㉠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매년 종사자 전체 혹은 직종·업무별로 수립한 내부교육 ㉡ 4대 법정 교육(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장애인 인식개선) ㉢ 기술자격(기술사 등)에 따른 보수교육 등 법정교육		
확인사항		
☐ 연간 교육·훈련 계획수립 문서, 기록물등록대장, 교육 이수증		

세부평가 A.2.7	진단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도(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진단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도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100%인 경우	☐ 30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20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10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60% 미만인 경우	☐ 5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 실적이 없음	☐ 0
평가 취지		
적극적인 전문역량강화 활동 참여 유도를 통한 진단의 질적 제고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진단인력의 전문성 향상 활동 실적을 평가		
☐ 평가 산식 $\text{참여율} = \frac{\text{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 인력 수}}{\text{전체 진단인력 수}} \times 100$ ※ 진단인력 1인당 1회에 한함		
☐ 평가 기준 ○ 전문성 향상활동 인정범위		
㉠ 산업안전보건 분야 학회, 세미나를 참석한 경우(온라인 포함) ㉡ 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온라인 포함) ㉢ 산업안전·보건 분야 대학교, 대학원 등의 학위과정을 졸업, 수료 또는 수강하는 경우 ㉣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학회, 세미나(㉠, ㉡) 참여 등 전문성 향상활동은 참석증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범위(㉠, ㉢, ㉣) -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 기관의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위의 인정범위 내 해당 기관에서 금전적 지원, 시간적 배려 등이 증빙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확인사항		
☐ 자격증 관련 서류, 세미나 참석증, 학위과정 증빙서류 등		

세부평가 A.3.1	보유 장비 운용·관리 체계의 적정성(배점: 20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보유 장비 운용 관리 체계의 적정성	필수사항이 모두 수립되어 있는 경우	☐ 20
	필수사항 중 1가지 누락된 경우	☐ 15
	필수사항 중 2가지 누락된 경우	☐ 10
	필수사항 중 3가지 누락된 경우	☐ 5
	필수사항 중 4가지 누락된 경우	☐ 3
	장비운용지침이 없는 경우	☐ 0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회람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 취지		
보유 장비의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진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함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장비운용지침 등을 확인하여 필수 반영사항 중 누락 여부를 평가 ☐ 평가 기준 ☐ 아래의 필수사항 반영과 실행여부를 평가 - 장비운영지침 등에 필수사항은 반영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행여부가 지침 등과 상이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필수사항 ㉠ 총칙에 관한 사항 - 보유 장비 사용의 목적, 적용, 정의 등 ㉡ 보유 장비 운용의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관리조직, 관리방법, 장비 담당자별 임무, 장비 현황 등 ㉢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의 구매, 점검, 보관 및 장소 지정 등 ㉣ 최신의 고시에 따른 검·교정 주기 설정에 관한 사항 - 장비별 검·교정 주기 및 자체 보정 기준 등 ㉤ 불용처리,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 불용 기준 및 절차 등 ㉥ 장비별 이력카드에 관한 사항 -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이력관리 등 ㉦ 보유 장비의 사용자 매뉴얼(작동방법 및 교정방법 등) - 기관의 장비운용지침 등 내규에 포함된 것에 한함(장비 제조 업체의 매뉴얼은 불인정)		
※ 위 필수사항의 기준에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누락으로 평가		
확인사항		
☐ 장비운용 규정(지침), 장비이력카드, 보유 장비 대장 등		

세부평가 A.3.2		보유 장비 검·교정 실시의 적정성(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보유 장비의 검·교정 실시의 적정성	검·교정을 모두 실시한 경우	☐	30
	검·교정을 1대 누락한 경우	☐	20
	검·교정을 2대 누락한 경우	☐	10
	검·교정을 3대 누락한 경우	☐	5
	검·교정을 4대 이상 누락한 경우	☐	0
평가 취지			
보유 장비의 검·교정 실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진단장비의 신뢰성 향상 도모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장비운용지침 등을 확인하여 현장 평가 및 검·교정 주기 및 실시(검·교정 성적서)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기준 ㉠ 검·교정 주기가 3년(센서는 2년)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음 ㉡ 장비가 정상작동하고 있음 ㉢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음			
※ 위의 기준에 누락한 경우 한 단계 하향 평가 ※ 장비 보유 대수 대비 검·교정이 누락된 대수를 확인하여 평가			
확인사항			
☐ 장비운용 규정(매뉴얼), 장비이력카드, 검·교정 실적(성적서) 등			

참고 1

장비의 검교정 주기 관련

- 교정 주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주기를 설정**하여 실시
 - 단,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함)
 - *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임
- 자체 교정 주기 정할 수 없는 경우 KOLAS-G-013의 **교정주기 준용**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교정대상 및 주기)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주기를 2년마다 검토하여 재 고시할 수 있다.

▶ “교정”은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제도임. 그러나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 또는 소관법령을 적용받는 입장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강제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참고 2

교정 · 시험측정 대상 장비 및 주기

종류	시설 · 장비 기준	대상여부	교정주기(개월)
일반안전 진단기관	1. 회전속도측정기	○	36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	36
	3. 재료강도시험기	○	36
	4. 진동측정기	○	36
	5. 표준압력계	○	36
	6. 절연저항측정기	○	36
	7. 만능회로측정기	○	36
	8. 산업용내시경	○	36
	9. 경도측정기	○	36
	10. 산소농도측정기	○	24
	11. 두께측정기	○	36
	12. 가스농도측정기	○	24
	13. 가연성가스 검지관	○	36
	14. 수압시험기	○	36
	16. 접지저항측정기	○	36
	17. 계전기기사험기	○	36
	18.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36
	19. 정전전위측정기	○	36
	20. 차압측정기	○	36
건설안전 진단기관	1. 가스농도측정기	○	24
	2. 산소농도측정기	○	24
	3. 재료강도시험기	○	36
	4. 진동측정기	○	36
보건 진단기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및 가스 · 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	36
	다. 분진측정기	○	36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	36
	마. 대기의 온도 · 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	36
	바. 산소측정기	○	24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24
	아. 원자흡광광도계	○	36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36
	차. 자외선 · 가시광선 분광광도계	○	36
	카. 현미경	○	36
	타.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36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챔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세부평가 A.3.3	진단장비 사용 숙지 상태(배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진단장비 사용 숙지상태	법정장비 숙지율이 100%인 경우	☐ 10
	숙지율 75%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7
	숙지율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5
	숙지율 50% 미만인 경우	☐ 3
평가 취지		
장비 사용방법 및 교정방법에 대한 진단인력의 이해도 향상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진단인력의 법정장비 사용 및 교정방법 숙지 정도 평가 ○ 진단인력 2명 및 법정장비 2종 선정 ○ 선정된 장비의 사용법 및 교정방법에 대한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 평가 산식 $\text{숙지율} = \frac{\text{장비의 사용방법 및 교정방법 숙지 횟수}}{4\text{회}} \times 100$ ☐ 평가 기준 ○ 사용법은 알고 있으나 교정법을 모르는 경우 숙지횟수 불인정 예) 평가자 1은 2종류 장비의 사용법 및 교정방법을 모두 알고 평가자 2는 1종류 장비사용법은 알고 있으나 교정방법을 모르는 경우 $[2\text{회(평가자 1)} + 1\text{회(평가자 2)}] \div 4\text{회} = 75\%$, “7점”으로 평가	
확인사항		
☐ 장비 사용 매뉴얼, 평가자 사용 및 교정방법 숙지 결과 등		

세부평가 A.3.4	추가 장비 확보 및 활용 노력(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추가 장비 확보 및 활용 노력	추가 장비를 5종 이상 확보 및 활용한 경우	☐ 30
	추가 장비를 4종 확보 및 활용한 경우	☐ 25
	추가 장비를 3종 확보 및 활용한 경우	☐ 20
	추가 장비를 2종 확보 및 활용한 경우	☐ 10
	추가 장비를 1종 확보 및 활용한 경우	☐ 5
	추가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 0
평가 취지		
다양한 장비 활용을 통해 진단의 수준 향상 및 신뢰성 제고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추가 장비의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후 실물, 구매실적(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진단결과보고서 상에 활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평가기준 추가 장비 인정기준 ㉠ 산안법 상 안전보건진단기관 법정 장비 이외의 장비 ※ 위의 장비 중 해당 진단기관 등록 시 법정장비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임대장비도 포함하여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정(임대계약서 및 실물 확인) 추가 장비 불인정 기준 ㉡ 타 부서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장비인 경우 임대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 구매이력(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 단순 측정용 장비(자, 버니어캘리퍼스 등)의 경우 ㉥ 타법에 따라 지정 등록된 기관 중 해당분야 필수장비인 경우 ※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 이상의 추가 장비는 1종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확인사항		
☐ 장비운용 규정(매뉴얼), 장비이력카드, 진단보고서		

세부평가 A.3.5		홈페이지 등 기관의 정보공개 노력(배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홈페이지 등 기관의 정보공개 노력	필수사항 모두 공개한 경우	☐	10												
	필수사항 1건 미공개한 경우	☐	7												
	필수사항 중 2건 미공개한 경우	☐	5												
	필수사항 중 3건 이상 미공개한 경우	☐	3												
	홈페이지 등 온라인 커뮤니티 미운영한 경우	☐	0												
평가 취지															
홈페이지 등 커뮤니티의 정보 공개를 통한 진단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하여 필수 반영사항의 공개 여부 평가															
☐ 평가기준 ○ 홈페이지 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필수 반영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필수 사항</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인력현황</td> <td>① 자격 ② 안전보건경력 ③ 업무 분장</td> <td>법정 진단인력</td> </tr> <tr> <td>장비현황</td> <td>④ 장비명 ⑤ 보유대수</td> <td></td> </tr> <tr> <td>실적현황</td> <td>⑥ 기관일반현황(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⑦ 업종별 진단실적 ⑧ 규모별 진단단가 ⑨ 진단인력 투입일수 ⑩ 기관평가 등급 ⑪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의 게시물을 링크한 경우</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필수 사항	비고	인력현황	① 자격 ② 안전보건경력 ③ 업무 분장	법정 진단인력	장비현황	④ 장비명 ⑤ 보유대수		실적현황	⑥ 기관일반현황(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⑦ 업종별 진단실적 ⑧ 규모별 진단단가 ⑨ 진단인력 투입일수 ⑩ 기관평가 등급 ⑪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의 게시물을 링크한 경우	
항목	필수 사항	비고													
인력현황	① 자격 ② 안전보건경력 ③ 업무 분장	법정 진단인력													
장비현황	④ 장비명 ⑤ 보유대수														
실적현황	⑥ 기관일반현황(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⑦ 업종별 진단실적 ⑧ 규모별 진단단가 ⑨ 진단인력 투입일수 ⑩ 기관평가 등급 ⑪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의 게시물을 링크한 경우														
☐ 개인 블로그·카페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 개인 블로그·카페의 경우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닌 개인의 내용(관심분야, 취미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하며, 전용으로 진단기관의 내용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정															
확인사항															
☐ 진단기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등															

세부평가 A.4.1	포상실적(가점: 최대 +2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포상실적	평가대상 기간 내 기관 및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최대 +20점]											
평가 취지	평가대상기관 또는 진단인력(기관)에 대한 포상실적에 따른 평가											
평가내용	☐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진단 관련 분야 포상 훈격 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 <table border="1"> <tr> <td>대통령 포상</td><td>20점 × 포상 수</td></tr> <tr> <td>국무총리 포상</td><td>15점 × 포상 수</td></tr> <tr> <td>장관 포상 서울특별시장(장관급)</td><td>10점 × 포상 수</td></tr> <tr> <td>공단 이사장 포상 광역시·도지사(차관급)</td><td>7점 × 포상 수</td></tr> <tr> <td>고용노동청지청장, 공단(교육원장,인증원장, 본부장, 지사장), 지자체(시·도·군구), 민간단체(안전학회에 한함)</td><td>3점 × 포상 수</td></tr> </table> ※ 포상에 기재된 기관명이 평가대상 기관명과 다를 경우 불인정 ※ (예시)진단기관이 국무총리 포상을 받았고, 장관포상을 받은 직원 2명, 공단 이사장 포상을 받은 직원이 1명 있을 경우 ⇒ 총 42점(15점+10점+7점) 이나 상한 20점 부여		대통령 포상	20점 × 포상 수	국무총리 포상	15점 × 포상 수	장관 포상 서울특별시장(장관급)	10점 × 포상 수	공단 이사장 포상 광역시·도지사(차관급)	7점 × 포상 수	고용노동청지청장, 공단(교육원장,인증원장, 본부장, 지사장), 지자체(시·도·군구), 민간단체(안전학회에 한함)	3점 × 포상 수
대통령 포상	20점 × 포상 수											
국무총리 포상	15점 × 포상 수											
장관 포상 서울특별시장(장관급)	10점 × 포상 수											
공단 이사장 포상 광역시·도지사(차관급)	7점 × 포상 수											
고용노동청지청장, 공단(교육원장,인증원장, 본부장, 지사장), 지자체(시·도·군구), 민간단체(안전학회에 한함)	3점 × 포상 수											
	☐ 지부(출장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각 지부의 포상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확인사항												
	☐ 표창장 실물, 포상 일련번호 등											

세부평가 A.4.2	업무정지 처분(감점: 최대 -9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업무정지 처분	평가 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최대 - 90점]	
평가 취지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평가상 감점 조치	
평가내용	☐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과를 받아서 평가 ○ 처분 확정 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평가 ○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 ○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점수: -30점 × 처분 개월 수(최대 감점 -90점) ※ (예시)진단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6개월을 받은 경우, 실제 감점은 -180점(-30점×6개월)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 90점 부여 ☐ 지부(출장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각 지부의 처분 내역을 합산하여 평가	
확인사항	☐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현장 평가 시 확인 등	

세부평가 A.4.3	시정조치 경고처분 실적(감점: 최대 -5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시정조치· 경고처분 실적	평가 대상 기간 내 시정조치·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최대 -50점]	
평가 취지	시정조치·경고처분에 따른 평가상 감점 조치	
평가내용	☐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경고처분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서 평가 ○ 처분 확정 일을 기준으로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수 평가 ○ 평가대상 기간 내 시정조치·경고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 - 시정조치·경고처분에 따른 점수: -5점 × 처분 건수 (최대 감점 - 50점) ☐ 지부(출장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각 지부의 처분 내역을 합산하여 평가	
확인사항	☐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현장 평가 시 확인 등	

업 무 성 과

B.1. 진단보고서의 충실성 (380점)

세부평가 B.1.1	자율진단 실시 노력도(배점: 5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자율진단 실시 노력도	실시율이 30% 이상인 경우	☐ 50
	실시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40
	실시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30
	실시율이 5%이상 10% 미만인 경우	☐ 20
	실시율이 5% 미만인 경우	☐ 10
	자율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 취지	진단기관의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진단 실시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기간에 수행한 전체 진단(명령+자율)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평가 - '22년 1년간 실적을 평가에 반영 ☐ 평가산식 - 실시율 = $\frac{\text{자율진단 실시 사업장 수}}{\text{전체 진단 사업장 수}} \times 100$ ※ 전체 진단 사업장 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10건으로 적용 ☐ 평가 기준 평가 기준 ① 자율진단 실적은 진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평가대상기간 내 진단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자율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확인사항	☐ 자율진단보고서 및 실적 등	

업 무 성 과

B.1. 진단보고서의 충실성 (380점)

세부평가 B.1.2	진단일수 준수 노력도(배점: 4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진단일수 준수 노력도	준수율 100% 이상인 경우	☐ 40
	준수율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30
	준수율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20
	준수율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10
	준수율 70% 미만인 경우	☐ 0
평가 취지		
사업장 규모 위험도에 따른 투입인력의 최소 진단일수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진단(명령+자율) 실시 사업장에 실제 투입 진단일수와 최소 진단일수를 비교하여 평가		
☐ 평가 산식 $- \text{준수율} = \frac{\text{실제 투입 진단일수의 합}}{\text{최소 진단일수의 합}} \times 100$		
☐ 평가 기준 ○ 아래의 산정표에 따라 최소 진단일수와 실제 투입 진단일수를 확인 ○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준수 1건당 1단계 하향 평가 - 기술사 미 참여, 지정인력 활용 미흡*, 진단기간 중 인력중복 투입, 허위작성 * 투입인력이 지정인력 중 50% 이상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ex : 투입인력이 4명인 경우 지정인력을 2명 미만_1명 활용한 경우) ○ 보고서작성 진단일수는 현장 진단일수의 최대 3배까지만 인정		

[종합진단 산정표]

최소 진단 일수(단위: MD)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 = 50 + \frac{\text{근로자수} - 50}{20}$	$MD = 40 + \frac{\text{근로자수} - 40}{30}$	$MD = 30 + \frac{\text{근로자수} - 30}{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단위: MD)

위험도	사 업 종 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단위: 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건설안전진단 산정표]

최소 진단 일수(단위: MD)

공사금액	최소진단일수	비 고
20억 미만	5	
20억 이상 120억 미만	1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5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3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50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70	
2,900억이상	150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단위: MD)

진단일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5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3이상	기술사 3이상 또는 특급 7이상	기술사 5이상 또는 특급 10이상	기술사 10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50이상

-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말한다.

확인사항

☐ 진단보고서, 계약서 등

업 무 성 과

B.1. 진단보고서의 충실성 (380점)

세부평가 B.1.3	재해통계 분석에 따른 개선대책의 적정성(배점: 6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재해통계 분석에 따른 개선대책의 적정성	개선대책 제시율 100% 이상인 경우	☐ 60
	개선대책 제시율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50
	개선대책 제시율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40
	개선대책 제시율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30
	개선대책 제시율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
	개선대책 제시율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10
	개선대책 제시율 50% 미만인 경우	☐ 5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0
평가 취지		
재해발생현황분석에 따른 동종재해 예방대책의 제시 여부를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진단(명령+자율) 보고서를 샘플링(5건 이상)하여 최근 3년간 재해발생현황 및 원인 분석, 개선대책 제시의 적정성 평가 - 실적이 5건 미만인 기관의 경우 전수 확인 ○ 평가 산식 - 제시율 = $\frac{\text{개선대책이 적정하게 제시된 건수}}{\text{전체 재해건수}} \times 100$		
☐ 개선대책의 인정기준 ㉠ 최근 3년으로 평가년도를 포함하여 평가전년도·평가전전년도의 재해발생 현황 ㉡ 개선대책이라 함은 물적 요인, 인적요인, 관리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한 경우 ㉢ 현실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한 경우 ※ 사업장 특성 및 재해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적 대책으로만 작성된 경우에는 불인정 ※ 최근 3년간 재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60”점으로 평가		
확인사항		
☐ 진단보고서, 재해통계 현황 등		

업 무 성 과

B.1. 진단보고서의 충실성 (380점)

세부평가 B.1.4	진단보고서의 적정성(배점: 10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평가 산식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 취지	평가대상 기관의 진단보고서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고서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기관에 진단(명령+자율)보고서 중 샘플링(5건 이상)하여 해당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 - 실적이 5건 미만인 기관의 경우 전수 확인 ☐ 평가산식 및 평가기준 - 총 점수 = $\frac{\text{각 진단보고서별 평가 점수의 총 합}}{\text{샘플링 명령+자율진단보고서 총 건수}}$ ○ 첨부해당 분야(일반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진단) 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 ○ 사업장 특성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보정하여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일반안전진단</th> <th colspan="2">보건진단</th> <th colspan="2">건설안전진단</th> </tr> <tr> <th>평가항목</th> <th>배점</th> <th>평가항목</th> <th>배점</th> <th>평가항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td>총점</td><td>100</td><td>총점</td><td>100</td><td>총점</td><td>100</td></tr> <tr><td>1</td><td>3</td><td>1</td><td>3</td><td>1</td><td>3</td></tr> <tr><td>2</td><td>3</td><td>2</td><td>3</td><td>2</td><td>3</td></tr> <tr><td>3</td><td>3</td><td>3</td><td>5</td><td>3</td><td>3</td></tr> <tr><td>4</td><td>3</td><td>4</td><td>3</td><td>4</td><td>3</td></tr> <tr><td>5</td><td>3</td><td>5</td><td>3</td><td>5</td><td>3</td></tr> <tr><td>6</td><td>6</td><td>6</td><td>6</td><td>6</td><td>5</td></tr> <tr><td>7</td><td>3</td><td>7</td><td>3</td><td>7</td><td>5</td></tr> <tr><td>8</td><td>5</td><td>8</td><td>5</td><td>8</td><td>7</td></tr> <tr><td>9</td><td>5</td><td>9</td><td>5</td><td>9</td><td>3</td></tr> <tr><td>10</td><td>3</td><td>10</td><td>5</td><td>10</td><td>3</td></tr> <tr><td>11</td><td>3</td><td>11</td><td>5</td><td>11</td><td>3</td></tr> <tr><td>12</td><td>3</td><td>12</td><td>5</td><td>12</td><td>6</td></tr> <tr><td>13</td><td>3</td><td>13</td><td>10</td><td>13</td><td>3</td></tr> <tr><td>14</td><td>6</td><td>14</td><td>7</td><td>14</td><td>4</td></tr> <tr><td>15</td><td>4</td><td>15</td><td>3</td><td>15</td><td>3</td></tr> <tr><td>16</td><td>5</td><td>16</td><td>3</td><td>16</td><td>5</td></tr> <tr><td>17</td><td>6</td><td>17</td><td>5</td><td>17</td><td>3</td></tr> <tr><td>18</td><td>5</td><td>18</td><td>5</td><td>18</td><td>5</td></tr> <tr><td>19</td><td>3</td><td>19</td><td>5</td><td>19</td><td>3</td></tr> <tr><td>20</td><td>3</td><td>20</td><td>3</td><td>20</td><td>3</td></tr> <tr><td>21</td><td>3</td><td>21</td><td>3</td><td>21</td><td>3</td></tr> <tr><td>22</td><td>5</td><td>22</td><td>3</td><td>22</td><td>3</td></tr> <tr><td>23</td><td>3</td><td></td><td></td><td>23</td><td>3</td></tr> <tr><td>24</td><td>3</td><td></td><td></td><td>24</td><td>3</td></tr> <tr><td>25</td><td>5</td><td></td><td></td><td>25</td><td>3</td></tr> <tr><td>26</td><td>3</td><td></td><td></td><td>26</td><td>5</td></tr> <tr><td></td><td></td><td></td><td></td><td>27</td><td>4</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일반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총점	100	총점	100	총점	100	1	3	1	3	1	3	2	3	2	3	2	3	3	3	3	5	3	3	4	3	4	3	4	3	5	3	5	3	5	3	6	6	6	6	6	5	7	3	7	3	7	5	8	5	8	5	8	7	9	5	9	5	9	3	10	3	10	5	10	3	11	3	11	5	11	3	12	3	12	5	12	6	13	3	13	10	13	3	14	6	14	7	14	4	15	4	15	3	15	3	16	5	16	3	16	5	17	6	17	5	17	3	18	5	18	5	18	5	19	3	19	5	19	3	20	3	20	3	20	3	21	3	21	3	21	3	22	5	22	3	22	3	23	3			23	3	24	3			24	3	25	5			25	3	26	3			26	5					27	4						
일반안전진단		보건진단		건설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총점	100	총점	100	총점	100																																																																																																																																																																																							
1	3	1	3	1	3																																																																																																																																																																																							
2	3	2	3	2	3																																																																																																																																																																																							
3	3	3	5	3	3																																																																																																																																																																																							
4	3	4	3	4	3																																																																																																																																																																																							
5	3	5	3	5	3																																																																																																																																																																																							
6	6	6	6	6	5																																																																																																																																																																																							
7	3	7	3	7	5																																																																																																																																																																																							
8	5	8	5	8	7																																																																																																																																																																																							
9	5	9	5	9	3																																																																																																																																																																																							
10	3	10	5	10	3																																																																																																																																																																																							
11	3	11	5	11	3																																																																																																																																																																																							
12	3	12	5	12	6																																																																																																																																																																																							
13	3	13	10	13	3																																																																																																																																																																																							
14	6	14	7	14	4																																																																																																																																																																																							
15	4	15	3	15	3																																																																																																																																																																																							
16	5	16	3	16	5																																																																																																																																																																																							
17	6	17	5	17	3																																																																																																																																																																																							
18	5	18	5	18	5																																																																																																																																																																																							
19	3	19	5	19	3																																																																																																																																																																																							
20	3	20	3	20	3																																																																																																																																																																																							
21	3	21	3	21	3																																																																																																																																																																																							
22	5	22	3	22	3																																																																																																																																																																																							
23	3			23	3																																																																																																																																																																																							
24	3			24	3																																																																																																																																																																																							
25	5			25	3																																																																																																																																																																																							
26	3			26	5																																																																																																																																																																																							
				27	4																																																																																																																																																																																							
확인사항	☐ 진단보고서(5건 이상) 등																																																																																																																																																																																											

업 무 성 과

B.1. 진단보고서의 충실성 (380점)

세부평가 B.1.5		위험성평가의 양적(Quantitative) 적용(배점: 2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위험성평가의 양적(Quantitative) 적용	적용율 90% 이상인 경우	☐	20																			
	적용율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15																			
	적용율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10																			
	적용율 70% 미만인 경우	☐	5																			
	위험성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0																			
평가 취지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진단(명령+자율) 보고서를 샘플링(5건 이상)하여 공정별 위험성평가 양적 적용 여부 확인 - 실적이 5건 미만인 기관의 경우 전수 확인																						
☐ 평가 산식 - 적용률 = $\frac{\text{위험성평가 양적 적용 건수}}{\text{분야별 기술지도 건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위험성평가 기법은 모든 위험성평가 기법을 인정 ※ 위험성 추정 및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단계 하향 평가 ○ 위험성평가 적용 시 위험성기준 제시 여부를 확인(위험도=가능성×빈도) ※ 위험도 = 가능성(빈도)×중대성(강도)의 매트릭스 기준 제시																						
[현재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공정	위험성 수준	위험 수준 [최대 20점(빈도5×강도4)]																				
OO 공정 불가 위험	허용 불가 위험	빈도(4)					강도(4)				현재상태 빈도 4단계, 강도 4단계로써 종합 위험도는 16점임											
		1	2	3	4	5	1	2	3	4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4	5	6	7	8	9												
[개선 완료시 위험성 산출양식 예시]																						
		위험 수준[최대 20점(빈도5×강도4)]																				
빈도(1)					강도(4)				개선 후 빈도 1단계, 강도 4단계로 종합 위험도는 4단계로 낮아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2	3	4	5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확인사항																						
☐ 명령/자율 진단보고서 등																						

업 무 성 과

B.1. 진단보고서의 충실성 (380점)

세부평가 B.1.6		위험성평가의 질적(Qualitative) 적용(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위험성평가의 질적(Qualitative) 적용	적용률 98% 이상인 경우	☐	30																																						
	적용률 95% 이상 98% 미만인 경우	☐	20																																						
	적용률 90% 이상 95% 미만인 경우	☐	10																																						
	적용률 90% 미만인 경우	☐	5																																						
	위험성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0																																						
평가 취지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적정성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진단(명령+자율) 보고서를 샘플링(5건 이상)하여 공정별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 분석의 적정성 평가 - 실적이 5건 미만인 기관의 경우 전수 확인 ○ 위험성의 결정 방법과 위험성의 크기에 따른 감소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한 진단 항목을 평가 ○ Matrix(3×3, 5×4, 5×5 등) 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와 개선 후의 위험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																																									
☐ 평가 산식 - 적용율 = $\frac{\text{위험성평가 적정 적용 건수}}{\text{진단 항목 건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대책을 관리적 대책으로 기술한 경우 불인정 ○ 위험도를 공정(설비), 작업상황 등 기준에 맞게 기술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위험성 결정 예시 - 발생빈도(Frequency) <table border="1"> <thead> <tr> <th>발생빈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3</td> <td>연간 사고건수가 1회 이상</td> </tr> <tr> <td>2</td> <td>연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td> </tr> <tr> <td>1</td> <td>연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td> </tr> </tbody> </table> - 발생강도(Consequence) <table border="1"> <thead> <tr> <th>발생강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4(치명적)</td> <td>사망, 부상 2명 이상 / 재산 손실 10억 이상</td> </tr> <tr> <td>3(중대함)</td> <td>부상 1명 / 재산 손실 1억 이상 10억 미만</td> </tr> <tr> <td>2(보통)</td> <td>부상자 없음 / 재산손실 1억원 미만</td> </tr> <tr> <td>1(경미)</td> <td>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td> </tr> </tbody> </table> - 위험등급 결정(위험등급(R) = 발생빈도(F)× 발생강도(C))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3(상)</th> <th>2(중)</th> <th>1(하)</th> </tr> </thead> <tbody> <tr> <td>4(치명적)</td> <td>12</td> <td>8</td> <td>4</td> </tr> <tr> <td>3(중대함)</td> <td>9</td> <td>6</td> <td>3</td> </tr> <tr> <td>2(보통)</td> <td>6</td> <td>4</td> <td>2</td> </tr> <tr> <td>1(경미)</td> <td>3</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발생빈도	내용	3	연간 사고건수가 1회 이상	2	연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연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	발생강도	내용	4(치명적)	사망, 부상 2명 이상 / 재산 손실 10억 이상	3(중대함)	부상 1명 / 재산 손실 1억 이상 10억 미만	2(보통)	부상자 없음 / 재산손실 1억원 미만	1(경미)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		3(상)	2(중)	1(하)	4(치명적)	12	8	4	3(중대함)	9	6	3	2(보통)	6	4	2	1(경미)	3	2	1
발생빈도	내용																																								
3	연간 사고건수가 1회 이상																																								
2	연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연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																																								
발생강도	내용																																								
4(치명적)	사망, 부상 2명 이상 / 재산 손실 10억 이상																																								
3(중대함)	부상 1명 / 재산 손실 1억 이상 10억 미만																																								
2(보통)	부상자 없음 / 재산손실 1억원 미만																																								
1(경미)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																																								
	3(상)	2(중)	1(하)																																						
4(치명적)	12	8	4																																						
3(중대함)	9	6	3																																						
2(보통)	6	4	2																																						
1(경미)	3	2	1																																						
확인사항																																									
☐ 명령/자율 진단보고서 등																																									

업 무 성 과

B.1. 진단보고서의 충실성 (380점)

세부평가 B.1.7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 노력(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 노력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이 5건 이상인 경우	☐	30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이 4건인 경우	☐	25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이 3건인 경우	☐	20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이 2건인 경우	☐	15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이 1건인 경우	☐	10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 취지							
작업·공정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을 통한 진단의 신뢰도 향상을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진단(명령+자율) 보고서 중 선진 위험성평가 및 사고분석 기법 적용 우수사례에 대한 평가 ○ 전 공정이 아닌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경우에도 인정							
☐ 평가 기준 ○ 위험성평가 기법 인정 범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 <td>정량적 위험성평가</td> <td>FTA, ETA, CCA,CFD 등</td> </tr> <tr> <td>정성적 위험성평가</td> <td>JSA, 체크리스트기법, 안전성검토, HAZOP What if, FMECA, PHA, 상대위험순위결정 CHARM 등</td> </tr> </tbody> </table> ※ 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는 불인정				정량적 위험성평가	FTA, ETA, CCA,CFD 등	정성적 위험성평가	JSA, 체크리스트기법, 안전성검토, HAZOP What if, FMECA, PHA, 상대위험순위결정 CHARM 등
정량적 위험성평가	FTA, ETA, CCA,CFD 등						
정성적 위험성평가	JSA, 체크리스트기법, 안전성검토, HAZOP What if, FMECA, PHA, 상대위험순위결정 CHARM 등						
확인사항							
☐ 진단보고서 등							

업 무 성 과

B.1. 진단보고서의 충실성 (380점)

세부평가 B.1.8	보유 장비 활용의 적정성(배점: 50점, 감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보유 장비 활용의 적정성	장비 활용실적 산정표에 따른 점수 부여 [최대 50점]																	
	측정 장소, 대상설비, 판정기준 등이 불명확한 경우	☐ -10																
평가 취지	다양한 진단 장비의 활용을 통해 진단보고서의 수준과 진단요원의 전문성 향상 유도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장비 활용 산정표에 따른 합계점수로 평가 ☐ 평가 방법 ○ 진단(명령+자율) 보고서를 샘플링하여 진단에 사용된 법정장비 및 추가 장비의 사용 실적을 확인 ☐ 평가 산식(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frac{\text{사용 법정장비 종수} + \text{사용 추가 장비 종수}}{\text{샘플링한 명령진단 건수}} = \text{진단 사업장 평균 장비사용 실적(종수)}$ ○ 점수: 진단 사업장당 평균 장비 사용 실적(장비 종수) x 10점 ☐ 평가 기준 ○ 진단보고서 샘플링 기준(이하 샘플링 기준은 아래의 표를 따름) <table border="1"> <thead> <tr> <th>진단 건수</th><th>샘플링 건수</th><th>진단 건수</th><th>샘플링 건수</th></tr> </thead> <tbody> <tr> <td>10건 이하</td><td>4건</td><td>11~50건</td><td>5건</td></tr> <tr> <td>51~100건</td><td>10건</td><td>101~500건</td><td>13건</td></tr> <tr> <td>501~1,000건</td><td>15건</td><td>1,001건 이상</td><td>20건</td></tr> </tbody> </table> ○ 샘플링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측정값이 보고서에 기재(사진 포함)된 경우에만 활용실적으로 인정 ○ 샘플링한 보고서 중 1건 이상이 측정 장소, 대상설비, 판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 10점 감점		진단 건수	샘플링 건수	진단 건수	샘플링 건수	10건 이하	4건	11~50건	5건	51~100건	10건	101~500건	13건	501~1,000건	15건	1,001건 이상	20건
진단 건수	샘플링 건수	진단 건수	샘플링 건수															
10건 이하	4건	11~50건	5건															
51~100건	10건	101~500건	13건															
501~1,000건	15건	1,001건 이상	20건															
확인사항	☐ 진단보고서, 장비활용 대장, 사전 제출 자료 등																	

업 무 성 과

B.2. 재해감소성과 (50점, -100점)

세부평가 B.2.1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 감소율(배점: 2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 감소율	감소율이 90% 이상인 경우	☐	20
	감소율이 60%이상 90%미만인 경우	☐	15
	감소율이 30%이상 60%미만인 경우	☐	10
	감소율이 30% 미만인 경우	☐	5
평가 취지			
진단 실시 사업장의 중상해 재해자 감소성과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22. 1. 1. ~ '22. 12. 31.) 진단(명령+자율)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진단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평가 ※ 전년도 기 평가를 실시한 기관별 안전보건진단은 평가 제외 ○ 공표된 산업재해 공식(잠정)통계로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을 산출하여 평가			
☐ 평가 산식 $\text{감소율} = \frac{\text{①평가전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 - \text{②평가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text{①평가전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 \times 100$			
☐ 평가 기준 ○ 건설업의 경우 평가산식 “①평가전년도 업무상 중상해 사고재해율”은 “평가전년도 12월말 전체 건설업 중상해 사고재해율”을 적용하여 감소성과 평가 ○ 평가 대상 기관에서 수행사업장 현황 미제출시 “0점” 부여 ○ 중상해 사고재해율 산정 기준 [중상해 사고재해율 = (㉔중상해 사고재해자수 / ㉓근로자수)×100] - ㉓근로자 수: 평가전년도 12월말 공식통계 근로자 수 ※ 건설업으로서 건설공사가 종료한 경우 종료 전 근로자 수 - ㉔중상해 사고재해자 수: 진단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전후 1년간 발생한 중상해 사고재해자* 수(발생일 기준) * 중상해 사고재해자의 정의: 휴업급여 지급기간 90일 이상의 업무상 사고부상자 ※ 안전·건설 진단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중상해를 제외한 중상해 사고재해자를 적용하고, 보건진단은 산소결핍,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화학물질 접촉 등에 따른 중상해 사고재해자를 적용 - 진단보고서 제출일 전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산출된 재해율에 일자 보정			
확인사항			
☐ 명령+자율 진단사업장 현황, 공식(잠정)통계 DB 등			

업 무 성 과

B.2. 재해감소성과 (50점, -100점)

세부평가 B.2.2	사망만인율 감소율(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사망만인율 감소율	감소율 100% 이상인 경우	☐ 30
	감소율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20
	감소율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10
	감소율 60% 미만인 경우	☐ 5
평가 취지		
진단 실시 사업장의 사망만인율 감소성과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22. 1. 1. ~ '22. 12. 31.) 진단(명령+자율)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진단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평가 ※ 전년도 기 평가를 실시한 기관별 안전보건진단은 평가 제외 ○ 공표된 산업재해 공식(잠정)통계로 업무상 사망만인율 산출		
☐ 평가 산식 감소율 = $\frac{\text{①평가전년도 업무상 사망만인율} - \text{②평가년도 업무상 사망만인율}}{\text{①평가전년도 업무상 사망만인율}} \times 100$		
☐ 평가 기준 ○ 건설업의 경우 평가산식 “①평가전년도 업무상 사망만인율”은 “평가전년도 12월말 전체 건설업 사망만인율”을 적용하여 감소성과 평가 ○ 평가대상기관에서 수행사업장 현황 미제출시 “0점” 부여 ○ 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사망만인율 = (㉔사망자 수 / ㉓근로자 수)×10,000] - ㉓근로자 수: 평가전년도 12월말 공식통계 근로자 수 ※ 건설업으로서 건설공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 전 근로자 수 - ㉔사망자수: 진단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전후 1년간 발생한 사망자의 수(발생일 기준) ※ 안전·건설 진단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을 제외한 사고사망자를 적용하고, 보건진단은 진폐를 제외한 질병사망자를 적용 - 진단보고서 제출일 전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산출된 사망만인율에 일자 보정		
확인사항		
☐ 명령+자율 진단사업장 현황, 공식(잠정)통계 DB 등		

업 무 성 과

B.2. 재해감소성과 (50점, -100점)

세부평가 B.2.3		진단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감점: -10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진단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진단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 x -25점	_____점
평가 취지			
○ 진단기관의 사고사망자수 감소 노력도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기관의 진단 수행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평가			
- 진단 사업장에서 진단보고서 제출일 이후 평가년도('22. 1. 1. ~ '22. 12. 31.)에 발생하여 승인된 사고 사망자수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산식: 진단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 x -25점 (최대 -100점)			
○ 평가 기준			
- 안전·건설 진단 기관: 사고사망자 수(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은 제외)			
- 보건진단기관: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사망자			
- 사고사망자 수는 진단기관에서 실시한 진단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			
- 진단보고서 제출일 이후 발생·승인된 건에 대하여 평가			
확인사항			
○ 수행사업장 현황, 사고사망자 현황			

세부평가 B.3.1	진 단 사업장 만족도(배점: 5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진 단사업장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 95점 이상인 경우	☐ 50
	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 40
	만족도 조사결과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30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 20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 10
	민원이 발생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 0
평가 취지		
진단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행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년도 수행사업장 현황을 제출받아 평가 ○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 고용노동부 및 공단 기관 관련 민원 건수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산식 ○ 외부 리서치 기관 의뢰 결과 만족도 점수에 따라 평가 ○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민원 발생 건수에 따라 평가 ☐ 판단 기준 ① 조사된 모수가 5개 미만 또는 성공 조사건수가 5개 미만인 경우 - 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체 평균점수를 초과한 경우 평균점수에서 한 단계 상향 평가 - 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전체 평균점수 이하인 경우 평균점수에서 한 단계 하향 평가 ② 위탁 실적은 있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는 “20”점으로 평가 - 공고문의 기한 내 사전제출자료 미제출 기관은 “0”점으로 평가 ③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 진정서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0”점으로 평가	
확인사항		
☐ 외부 리서치 전문업체 설문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공단 등 민원 확인		

업 무 성 과

B.4. 진단 우수사례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120점)

세부평가 B.4.1	안전보건진단 우수사례(배점: 7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안전보건진단 우수사례	안전보건진단 우수사례 심사표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 취지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우수진단보고서의 공유 및 전파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기관에 우수진단보고서(1건)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 공단 우수사례 평가위원회(4~5인, 내·외부)를 구성하여 아래 심사표에 따라 평가 ☐ 평가 산식 ○ 안전보건진단 우수사례 심사표에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70점 환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심사 항목</th> <th>심사기준</th> <th>배점</th> <th>특점</th> </tr> </thead> <tbody> <tr> <td>진단 준비과정의 체계성</td> <td> - 예비심사의 적정성 - 진단반원 구성의 적정성 - 진단법위, 일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td> <td>20</td> <td></td> </tr> <tr> <td>진단 수행의 적정성</td> <td>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의 적정성 - 진단수행사항의 충실성(누락여부 확인) - 사업장 실정을 고려한 진단 수행 여부 - 진단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노력 </td> <td>20</td> <td></td> </tr> <tr> <td>관리적 사항</td> <td> - 총평의 전달력 - 재해분석 및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전 및 관련 노동환경 분석·적용 </td> <td>20</td> <td></td> </tr> <tr> <td>진단수준 제고 노력도</td> <td> - 과학적 진단기법의 적용 - 법정·비법정 진단장비의 활용도 - 진단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td> <td>20</td> <td></td> </tr> <tr> <td>보고서 작성방법</td> <td> -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위험성평가 및 사고분석 기법의 적용 </td> <td>20</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점</td> <td>100</td> <td></td> </tr> </tbody> </table>			심사 항목	심사기준	배점	특점	진단 준비과정의 체계성	- 예비심사의 적정성 - 진단반원 구성의 적정성 - 진단법위, 일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진단 수행의 적정성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의 적정성 - 진단수행사항의 충실성(누락여부 확인) - 사업장 실정을 고려한 진단 수행 여부 - 진단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노력	20		관리적 사항	- 총평의 전달력 - 재해분석 및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전 및 관련 노동환경 분석·적용	20		진단수준 제고 노력도	- 과학적 진단기법의 적용 - 법정·비법정 진단장비의 활용도 - 진단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20		보고서 작성방법	-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위험성평가 및 사고분석 기법의 적용	20		총점		100	
심사 항목	심사기준	배점	특점																												
진단 준비과정의 체계성	- 예비심사의 적정성 - 진단반원 구성의 적정성 - 진단법위, 일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진단 수행의 적정성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의 적정성 - 진단수행사항의 충실성(누락여부 확인) - 사업장 실정을 고려한 진단 수행 여부 - 진단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 노력	20																													
관리적 사항	- 총평의 전달력 - 재해분석 및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전 및 관련 노동환경 분석·적용	20																													
진단수준 제고 노력도	- 과학적 진단기법의 적용 - 법정·비법정 진단장비의 활용도 - 진단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20																													
보고서 작성방법	-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 위험성평가 및 사고분석 기법의 적용	20																													
총점		100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 평가 실시 공고문의 우수사례 제출일 기한 내에 미제출 한 경우 “0”점 부여 ○ 우수사례 예시 · 특화된 진단기법을 활용한 현장진단 사례 · 진단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통한 재해감소 사례 · 진단인력의 자기계발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노력 및 실적 · 업무처리 개선절차 등																														
확인사항	☐ 우수진단보고서 등																														

업 무 성 과

B.4. 진단 우수사례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120점)

세부평가 B.4.2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활동 실적(배점: 3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활동 실적	우수사례 활동을 3종 이상 실시한 경우	☐ 30
	우수사례 활동을 2종 실시한 경우	☐ 20
	우수사례 활동을 1종 실시한 경우	☐ 10
	우수사례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 취지		
기관의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활동 유도를 통한 적극적 재해예방활동 강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실행 종수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 산식 ○ 안전문화 활동 실행 종수 x 10점 ☐ 평가 기준 우수사례 활동 인정항목 ① 진단사업장에 공정안전 개선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보급한 실적(1회 이상) ②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캠페인 참여(1회 이상) ③ 자체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캠페인 실적(1회 이상) ④ 안전관련 신문기고 등 언론매체 홍보 실적(1회 이상) ⑤ 진단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집체교육 실시(1회 이상) ⑥ 지자체, 공단 등 안전분야 자문위원으로 위촉(위촉장이 있는 경우) ⑦ 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발표 건수가 있는 경우(1회 이상) ⑧ 공단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단한 경우(1회 이상) ⑨ 위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의 공단 '웹진 구독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 (위탁사업장의 신규가입이 5%이상) ⑩ 기타 진단 사업(영업)과 무관하고 위 내용과 동등 이상의 활동 실적 등	

업 무 성 과

B.4. 진단 우수사례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120점)

세부평가 B.4.3	전문분야 진단 실적(배점: 2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전문분야 진단 실적	전문분야 진단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 20
	전문분야 진단실적이 1~2건인 경우	☐ 10
	전문분야 진단실적이 없는 경우	☐ 0
평가 취지		
전문분야 및 고도화된 진단을 유도하여 기관의 전문성 강화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기관에서 실시한 진단실적 중 전문진단 실적에 대해 평가		
☐ 평가 기준 ○ 전문분야 진단 실적평가 - 전문분야 진단 실적: PSM 사업장에 대한 진단 실적 - 위험기반검사(RBI, Risk Based Inspection) 기법을 활용한 진단 실적 - 안전수준 및 안전문화 평가 수단(ISRS* 등)을 통한 진단 실적 * ISRS: 국제안전등급심사(International Safety Rating System)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 실적(KOSHA-MS, ISO 45001 등)		
확인사항		
☐ 진단보고서 등		

업 무 성 과

B.5. 정부정책 반영 노력도 (+30점)

세부평가 B.5.1	K2B 전산 관리의 적정성(가점: +20점, +10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K2B 전산 등록의 적정성 (신규기관만 해당)	기한 내에 기관 정보 등을 등록한 경우	☐ +10
	기한을 초과하여 정보 등록하거나 미등록한 경우	☐ 0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 여부	기한 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 +10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거나 미작성·미등록한 경우	☐ 0
자체평가의 적정성	자체평가 결과와 공단 평가 결과 총점의 오차가 30점 미만인 경우	☐ +10
	자체평가 결과와 공단 평가 결과 총점의 오차가 3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 +5
	자체평가 결과와 공단 평가 결과 총점의 오차가 50점 이상인 경우	☐ 0
평가 취지		
기관에서 K2B 전산 관리 상태의 적정성을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K2B 입력 현황을 확인하여 기관 등록(신규기관만) 및 자체평가보고서 등록여부를 평가 ○ K2B 전산에 기관의 자체평가보고서 등록기한 및 평가점수를 확인하여 평가		
☐ 판단 기준 ○ K2B 전산등록은 기관에서 기한 내에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규기관만 해당) ○ “자체평가보고서 등록 여부” 항목 평가는 작성양식에 따라 모두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에 한하여 K2B 등록 현황을 확인하여 평가 ※ 평가실시 공고 시 제시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전자료 외에 관련 증빙자료는 K2B에 등록 불필요 ○ 자체평가보고서 오차점수는 기관 자체평가와 공단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오차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제외 항목(5개 항목)을 제외한 점수의 합산 점수 기준임 - 지표별 평가근거, 결과를 모두 작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자체평가 항목 1개 이상 평가 방법, 평가 결과를 미작성한 경우 자체평가의 적정성은 “0”점 부여(붙임 작성예시 참조) ※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인정함 ※ K2B 자체평가보고서 등록시 증빙자료를 압축하여 K2B에 등록(필수사항은 아님)		
확인사항		
☐ K2B 등록 결과,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기관의 진단사업장 현황 등 증빙자료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예시]

세부평가 A.2.7

진단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도(배점: 30점)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로 체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 결과
총 점		
진단인력의 역량강화 활동 노력도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100%인 경우	☐ 30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20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10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율 60% 미만인 경우	☒ 5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 실적이 없음	☐ 0

평가방법

☐ 평가 산식

- 참여율 : $\frac{\text{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 인력 수}}{\text{전체 진단인력 수}} \times 100$

30 % = $\frac{\text{3명}}{\text{10명}} \times 100$

☐ 작성 양식

역량강화 종류	행사명	취득(참석)일	장소	주관기관	취득(참석)자 성명
박사학위 취득	산업안전학과	22. 00.00	대 학원	00대학교	박00
세미나 참석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000 세미나 참석	22. 00.00	킨텍스	안전보건 공단	이00
세미나 참석	000안전 세미나	22. 00.00	00호텔	한국 안전 학회	김00

* 해당 기관에서 금전적 지원, 시간적 배려 등이 증빙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자체평가 결과 (평가근거 명확히 제시)	○ 전체 진단인력 수 : 10명 (김00, 이00, 박00, 최00.....) ○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 인력수 : 3명 (김00, 이00, 박00) ○ 참여율 : 30%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세미나 참석증, 박사학위기, 박사학위 과정 학자금 지원 내역 등) 기관 평가시 제시 예정